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 - 98

제출년월일 : 2017. 1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,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**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규정 신설**

- 제1호 : 기금운용계획 ⇒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- 제2호 : 결산보고 ⇒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

나. **현행 조례의 존속기한 연장 및 종기일을 조례안에 명시**

-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

다. **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른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**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7. 10. 19. ~ 2017. 11. 8. (의견제출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
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라.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7.11.16.)

바.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사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련사업”을 “관련 사업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인정 되는”을 “인정되는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설치·운영 할”을 “설치·운영할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

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9조 중 “한다)　를”을 “한다)를”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 할”을 “해촉할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본문 중 “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”을 “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”으로 한다.

제17조 본문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해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,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관련 사업----------.
제2조(남북교류협력의 추진)① (생 략)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	제2조(남북교류협력의 추진)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인정되는 ----------.
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---------- 설치·운영할 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)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·관리하	제5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) ① ----------

되, 여유자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.	---------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----------.
②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② ---------- 대해서----------.
1. 기금운용계획	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결산보고	2.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----------.
제9조(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) 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관	제9조(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) ----------

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한다)를 ------.
제15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 1. ~ 4. (생 략)	제15조(위원의 해촉) 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해촉할 -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위원회의 회의)① (생 략)	제16조(위원회의 회의)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-- ---------- 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	제17조(수당 등) ---------- ---------- 대해서---------- ----------. ----- ---------- ----.

〔별지 제2호서식〕

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전행정국 총무과 배현주
연 락 처	02-3153-8205